

● 제315회 ●
서울특별시의회(정례회)
제5차 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2. 11. 24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【 서울특별시장 제출 】

의안번호 326

I. 조례안 개요

1. 제출자 및 제안경과

- 가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나. 제 출 일 : 2022. 10. 17.
- 다. 회 부 일 : 2022. 10. 21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안정적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해 성평등 기금 존속 기한 연장 필요

나. 주요내용

-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변경하여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도모함(안 제39조의2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양성평등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기 타 :

- 입법예고(2022. 9. 15. ~ 10. 5.) 결과 : 참조
-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박지향)

1 조례안의 개요

- 동 개정안은 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내용임.

2 주요사항 검토

□ 성평등기금 존속기한 연장 (안 제39조의2)

- 개정안은 성평등 기금¹⁾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 될 예정임에 따라 성평등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 11월 31일로 연장하여 성평등 기금을 통해 수행하는 성평등 촉진 정책과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그 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.
- 기금의 존속기한과 관련하여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르면²⁾, “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

1) 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」 제39조(기금의 설치) ① 시장은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2.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. 그 밖의 수입금

2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

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(제1항),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고(제2항),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되,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(제3항)하고 있음.

- 서울시는 성평등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하여 지난 2022년 7월 ‘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’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금번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필요한 절차상 요건도 갖춘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서울특별시의회의 기금승안안 심의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일반회계와 유사·중복성 최소화와 함께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조건으로 적정 의견을 받은 바, 집행기관은 성평등 기금의 보다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임.

3 종합 의견

- 본 조례안은 성평등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하려는 내용으로 법적, 절차적 요건을 갖췄다 할 것임.

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- 다만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일반회계와 유사·중복성 최소화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조건으로 적정 의견을 받은 바, 집행기관은 성평등 기금의 보다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.